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성권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11420 |
|----------|-------|

발의연월일 : 2025. 7. 10.

발 의 자 : 이성권·서천호·정성국  
김용태·이현승·신성범  
조은희·박상웅·곽규택  
김도읍·권영세·이달희  
의원(12인)

### 제안이유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은 1962년부터 1971년까지 부산지역의 부랑인 수용시설인 영화숙과 재생원이 부랑인 등을 강제수용하여 강제노역·구타·가혹행위·성폭력 등으로 인권 또는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3년 8월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에 관하여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한 후, 영화숙·재생원에서 참혹한 인권침해가 실제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2025년 2월 총 181명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하였음.

그러나, 영화숙과 재생원이 부산지역 최대규모의 부랑인 집단수용시설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앞서 밝혀진 피해자보다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진상규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으로 고통받았던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보상과 지원도 이어져야 할 것임.

이에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피해를 보상하며, 이들의 생활안정과 인권신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산지역 영화숙과 재생원에서 부랑인 등을 강제수용하여 그 인권을 침해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피해자와 유족의 피해를 보상하며, 이들의 생활안정과 인권신장을 위한 지원을 법률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족 여부를 심의·결정하며, 이들에 대한 보상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도록 함(안 제4조).

다.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의 피해자 및 유족과 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개시하여야 함(안 제8조 및 제11조).

라. 위원회는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진술 및 출석, 청문회, 동행명령, 유해의 조사 및 발굴 등의 진상규명 활동을 수행함(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마. 위원회는 조사결정을 최초로 한 날부터 2년간 진상규명 활동을 수행하되, 1년의 범위에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진상규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20조).

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지급함(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 치유를 위해 트라우마 치유사업, 기념 또는 추모행사,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보존·관리 및 전시 등의 사업을 할 수 있음(안 제36조).



##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부산지역 영화숙과 재생원에서 부랑인 등을 강제 수용하여 그 인권을 침해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피해자와 유족의 피해를 보상하며, 이들의 생활안정과 인권신장을 위한 지원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이란 1962년부터 1971년까지 부산시(부산직할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소재한 재단법인 영화숙과 영화숙이 운영하였던 재생원이 부랑인 등을 강제수용하여 강제노역·구타·가혹행위·성폭력 등으로 인권 또는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 사건을 말한다.
2. “피해자”란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신체적·정신적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으로서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3. “유족”이란, 피해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직

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형제자매를 말하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피해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 중에서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은 제4조에 따른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4조에 따른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위임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 제2장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제4조(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①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라 피해자와 유족 여부를 심의·결정하며, 이들에 대한 보상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청 또는 직권에 따른 진상규명 조사개시결정 및 조사

2.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분석

3. 피해자 및 유족 여부의 심의·결정

4. 제15조에 따른 유해의 조사·발굴

5. 제17조에 따른 진상규명결정 및 진상규명불능결정

6. 제20조에 따른 진상규명 결과보고서 작성

7. 제21조에 따른 피해자 직권 결정

8. 제23조에 따른 보상금, 제24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제25조에 따른 생활지원금의 심의·결정 및 지급

9. 제35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

10. 그 밖에 진상규명과 보상 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 중에서 각 1명씩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부산광역시장 및 경찰청장으로 한다.

④ 위촉 위원은 피해자 및 유족 대표, 진상규명·인권·복지 등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

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⑤ 위촉 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진상규명 등 위원회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부위원장이 주재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장 1명과 그 밖의 직원으로 구성되는 사무처를 둔다.

⑨ 그 밖에 위원회·소위원회 및 사무처의 조직, 구성, 운영 및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위촉 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제4항에 따른 위촉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② 위촉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결원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위촉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조사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조사대상자 혹은 진상규명 신청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③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제2항에 따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 본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제8조(진상규명의 신청) ① 피해자 및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그 밖에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진상규명 및 피해자 또는 유족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위원회가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

에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신청이 완료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국회에 사유를 보고하고,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과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신청의 방식) ① 제8조에 따른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사진이나 문서 등의 자료도 제출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신청 취지와 신청의 원인이 되는 사실

② 그 밖의 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신청의 각하결정)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할 수 있다.

1. 진상규명 신청이 위원회의 진상규명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진상규명 신청의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회가 각하한 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신청하는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신청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 자료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11조에 따른 조사개시결정을 한 후에도 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한다.

제11조(진상규명 조사개시결정)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이 제10조 제1항의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개시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개시결정을 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제12조(진상규명 조사방법) ①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진술서 제출 요구
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관계기관·시설·단체(이하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한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 또는 물건의 보관

4. 관계기관등에 대한 사실 또는 정보 조회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 의뢰

6. 진상규명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장소 및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소, 시설, 자료나 물건에 대하여 하는 실지 조사

② 위원회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와 제244조의3을 준용한다.

③ 위원회가 제1항제6호의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위원회가 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와 제133조를 준용하되, 관계기관등이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의 소명을 검토한 결과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⑥ 제1항제4호의 사실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등은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관계기관등에 주민등록자료, 가족관계등록자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

구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은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제출·통보받은 자료 또는 물건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⑨ 위원회로부터 실지조사 또는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관계기관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해서는 아니 되며, 제7항의 자료를 요구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요구받은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청문회) ① 위원회는 진상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② 청문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회가 청문회와 관련하여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장이 해당하는 사람이나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요구서에는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인·감정인·참고인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신문할 요지(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한정한다)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⑦ 제4항에 따른 요구서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일이나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일 7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⑧ 제4항에 따른 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⑨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동행명령) ① 위원회는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중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과 관련하여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 등을 가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에 따른 청문회의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대상자의 성명·주거지. 단, 성명이 불분명할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

거지가 불분명할 때에는 주거지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2. 동행명령장 발부 이유

3. 동행할 장소 및 발부연월일

4. 동행명령장의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할 수 없으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5. 동행명령장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취지

③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  
중인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위원회의 위임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집행한다.

④ 그 밖에 동행명령장의 집행에 관한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유해의 조사·발굴 등) ① 위원회는 피해자의 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토지·공유수면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조사·발굴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조사·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농작물  
· 나무 등의 장애물을 제거·변경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제3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제3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국가  
지정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 있는 지역에 해당하거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제48조제5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제23조제5항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청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그 협의 결과에 따라 유해를 조사·발굴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발굴 과정에서 매장유산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바로 국가유산청장에게 알리고 국가유산청장과 다시 협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에 피해자의 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유해를 조사·발굴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발굴된 유해가 피해자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는 등 신원확인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의 신원과 가족확인을 위하여 발굴된 유해와 가족에 대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발굴된 유해가 피해자의 유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수사가 필요한 경우라고 인정할 때에는 그 유해의 발굴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피해자의 유해의 인정기준

· 절차와 신원확인 기준 · 방법 ·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위원회는 제11조에 따라 조사개시결정을 최초로 한 날부터 2년간 진상규명 활동을 한다. 다만, 2년 내에 진상규명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국회에 그 사유를 보고하고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활동기간 만료 이전에도 진상규명 조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써 진상규명 활동을 종료할 수 있다.

제17조(진상규명결정 및 진상규명불능결정) ① 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어 진상규명이 된 경우에는 진상규명 조사결과를 의결로써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진상규명 조사결과 진상을 밝히지 못하였거나 밝힐 수 없는 경우 진상규명불능임과 그 사유를 기재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8조(결정통지) ①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른 각하결정, 제11조에 따른 조사개시결정, 제17조에 따른 진상규명결정 또는 진상규명불능결정 등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8조제1항의 진상규명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대상자가 사망 또는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를 할 때에는 통지대상자에게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과 그 절차 및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④ 그 밖에 통지의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이의제기) ① 제18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1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종전의 이의신청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그 밖의 이의신청의 절차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진상규명 결과보고서 작성) 위원회는 제16조에 따라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피해자 직권 결정)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을 직권으로 피해자

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상자(대상자의 사망·행방불명 등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유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제20조에 따른 진상규명 결과보고서에 명시된 사람

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진실·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결정한 사건의 피해자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동의를 방법 및 절차, 대상자의 사망·행방불명 등으로 통지·동의를 불가능한 경우의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손실보상) ① 위원회는 타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 유해의 조사·발굴 등에 따른 타인 토지등에의 출입·땅파기 등 일시 사용이나 농작물·과수 등의 피해에 따른 손실. 다만, 땅파기 후 원상복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유해의 조사·발굴 업무에 따라 타인에게 발생한 손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장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조치

제23조(보상금) ① 국가는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피해의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민법」 제997조에도 불구하고 보상금 지급 결정 당시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보상금 지급 결정 당시의 「민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상속인 중 배우자는 제2조3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사실상의 배우자가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혼인하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3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 중 피해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이 4촌 이내 방계혈족과 같은 순위로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⑤ 제적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피해자의 경우 제2조제3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갖는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의료지원금)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으로 부상을 입은 피해자 중에서 그 부상으로 인하여 계

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간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치료·간호 및 보조장구 구입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하 “의료지원금”이라 한다)을 일시에 지급한다.

②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의료지원금의 지급액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생활지원금)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질병·장애 또는 노령 등으로 소득활동이 어려운 피해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이하 “생활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생활지원금은 자발적 기탁금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생활지원금의 지급기준,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지급 신청) ① 피해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제23조에 따른 보상금, 제24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제25조에 따른 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은 피해자 또는 유족으로 결정된 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27조(심의와 결정)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28조(결정서 송달 및 보상금등의 지급) ① 위원회가 보상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2항에 따라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보상금등의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재심의) ① 제27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피해자 또는 유족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27조와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7조 중 “90일”은 “30일”로 본다.

제30조(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31조(조세면제)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2조(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 ①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차감 지급하여야 한다.

②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의료지원금 또는 생활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법에 따른 의료지원금 또는 생활지원금을 차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보상금등의 환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등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2. 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34조(시효)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소송의 제기가 있는 날부터 확정판결이 있는 날까지 시효가 정지된다.

제35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정정)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으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기록을 정정할 수 있다.

## 제5장 피해자 및 유족 치유 등 지원

제36조(피해 치유사업)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및 유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트라우마 치유 사업
2. 기념 또는 추모행사
3.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보존·관리 및 전시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 치유사업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 또는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의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 또는 행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7조(불이익 처우 등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피해자 또는 유족이라는 이유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장 보칙

제38조(비밀준수 의무 등)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 위원회의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사람,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조사에 참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① 위원회는 피해자 및 유족의 결정,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보상금등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처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제4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7장 벌칙

제41조(벌칙) 제38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진술(진술서 제출을 포함한

다)을 거짓으로 한 사람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자
3.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실 또는 정보 조회에 허위로 회신한 자
4. 정당한 이유 없이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5. 정당한 이유 없이 제12조제3항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자
6. 정당한 이유 없이 제14조에 따른 동행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7. 제37조를 위반하여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2호의 행정청으로 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위원회의 위원 임명·위촉 및 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특례)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